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안내 자료]

II

지원 대상



1

지원 대상

1-1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이하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 「고용보험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근로자(사업주, 일용근로자,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피보험자 수 산정 시 제외)

** 우선지원 대상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기준 피보험자 수 계산 방식

- ✓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 소수점 이하는 올림(예시: 평균 8.02명 → 9명으로 인정)
- ✓ 청년을 먼저 채용하고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청년은 기준 피보험자 수 산정 시 제외

- 고용보험 신규성립일로부터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까지의 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 경우, 신규성립일이 속한 월부터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까지의 기간 동안의 평균 피보험자 수를 기준 피보험자 수로 함

* 고용보험 신규성립한 월에는 사업 참여 신청 불가

기준 피보험자 수 산정 기간 예시

- ❶ '18년에 고용보험 신규 성립되어 운영 중인 기업이 '25.5월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24.5월부터 '25.4월까지의 매월 말 피보험자 수의 평균이 기준
- ❷ '24.10.16.에 고용보험 신규 성립되어 운영 중인 기업이 '25.5월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24.10월부터 '25.4월까지의 매월 말 피보험자 수의 평균이 기준
- ❸ '25.2.9.에 고용보험 신규 성립되어 운영 중인 기업이 '25.7월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25.2월부터 '25.6월까지의 매월 말 피보험자 수의 평균이 기준
- ❹ '25.9.2.에 고용보험 신규 성립 기업은 '25.9월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할 수 없음
☞ '25.10월부터 사업 참여가 가능하며, '25.9월말 피보험자 수가 기준

○ 참여 신청 시점에 산정되는 기준 피보험자 수는 추후 채용자명단 제출, 지원금 지급 등 당해 연도 사업에 동일하게 적용됨

- 단,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 지연 등에 따라 참여신청 시점의 피보험자 수가 추후 변동되는 경우 기준 피보험자 수가 정정*될 수 있음(이 경우 참여가능 여부 및 지원한도도 변동 가능)

* 기준 피보험자수 정정은 해당 기업에 1회차 지원금(채용 후 최초 6개월분)이 지급되는 날까지만 적용되며, 그 이후에 발생하는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 지연 등에 따른 변동은 기준 피보험자수에 반영하지 않음

기준 피보험자 수 적용 예시

- ① '24.3월부터 '25.2월까지의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기준 피보험자 수)가 6명인 기업이 '25.3월 사업 참여 신청을 하며 신청 당시 피보험자 수가 3명이라 하더라도, 기준 피보험자 수가 6명이므로 5인 이상 기업으로 봄
- ② '24.3월부터 '25.2월까지의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기준 피보험자 수)가 6명인 기업이 '25.3월 사업 참여 신청(신청 당시 6명)을 하며, '25.4월에 지원대상 청년을 2명 채용하여 '25.12월에 지원금을 신청할 때, 지원금 신청 또는 지급 할 당시 피보험자 수가 4명(고용조정 이직이 없음)이라 하더라도 기준 피보험자 수가 6명이므로 5인 이상 기업으로 봄

1-2 다만, 기준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인 기업**이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 가능하며, 기업은 필요 시 **해당 기업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기업의 업종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업종코드(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코드와 동일) 기준으로 판단

①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 [별첨1]

*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정하는 업종으로, [별첨1] 목록에 해당하는 업종인 경우 인정

②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 [별첨2]

③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 [별첨3]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정의)에 따른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관련 업종으로 [별첨3] 목록에 해당하는 업종이거나 법령상 관련 업종임을 사업주가 입증하는 경우 인정

④ 청년 창업기업

청년 창업기업 지원 요건

√ 청년*이 창업하고,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신청일 기준 사업주가 청년**이면서, 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4 준용)

** '85.1.1. 이후 출생자

*** 창업자가 법인이면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이면 사업개시일(「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 준용)

⇒ ①해당기업의 창업일 기준 대표 나이가 청년(만 15~39세) & ②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일 현재 사업주가 청년('85.1.1. 이후 출생자) & ③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⑤ 미래유망기업 : 기술혁신성·성장가능성이 높아 중앙정부로부터 수상·선정 또는 인증된 기업 ⇨ [별첨4]

* [별첨4]에 따른 중앙부처 혁신기업 인정사업에 선정되어 참여신청 시점에 유효한 인증이 있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기업

⑥ 지역주력산업 : 최근 3년 이내('22.1.1~) 광역자치단체가 공식 발표한 지역별 주력 육성산업 ⇨ [별첨5]

* 광역자치단체가 제출한 지역주력산업 관련 업종으로 한정하며, 지역주력산업 관련 업종은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한 기업에게만 적용

⑦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 참여신청일 기준으로,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기업 [별첨6]

⑧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 : 참여신청일 기준으로,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별첨7]

* 원칙적으로 업종코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특별고용지원업종 관련 고시에 따라 개별적으로 인정되는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

1-3

참여기업이 여러 차례에 걸쳐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거나, 운영기관의 배정 인원 마감 등으로 다른 운영기관에 재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최초로 사업 참여 신청하여 승인받을 당시 적용받은 기준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함

예시

- ① '18년에 고용보험 신규 성립되어 운영 중인 기업이 '25.5월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하는 경우, '24.5월부터 '25.4월까지의 평균 피보험자 수가 기준 피보험자 수가 됨
 ☞ 채용 시점이 '25.7월, 9월, 11월이라 하더라도 기준 피보험자 수가 기준이 됨
- ② 수도권에 소재한, '24.1월부터 '24.12월까지의 평균 피보험자 수(기준 피보험자 수)가 10인인 기업이 '25.1월 A운영기관을 통해 사업 참여신청을 하고(지원 한도 5명), '25.3월 청년 3명(도약장려금 지원대상)을 채용. '25.7월 추가로 2명을 채용하려 하였으나, A운영기관에 배정된 인원이 소진되어, B운영기관과 협약을 다시 체결하고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하려는 경우
 ☞ B운영기관과 협약을 다시 체결할 때도 최초 참여 신청 시의 지원 한도(이 경우 5명)를 적용받으므로, A운영기관에서 이미 지원받은 3명을 제외하고 B운영기관에서는 최대 2명만 지원 가능

1-4

연 매출액이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x 1,900만원' 이상인 기업(업력 1년 이상인 기업에 한함)

* 업력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개시일부터 참여신청일까지의 기간을 산정

- (업력 1년 이상 기업의 경우) 연 매출액이 '해당기업의 기준 피보험자 수에 1,900만원*'을 곱한 값'보다 더 큰 경우에만 지원함

* 주 3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25년 시간당 최저임금 10,030원을 고려하여 1년간 지급되는 임금수준

- 연 매출액은 2023년, 2024년 중 1개년도(1.1.~12.31.)의 연 매출액을 의미하며, 과세 대상 기간이 1년 미만인 기업*은 해당기간의 매출액을 일 단위로 환산하여 연 매출액을 산정

* (예) 사업개시일이 '24.4.1.이어서 증빙하는 과세 대상기간이 '24.4.1.~'24.12.31.로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 매출액을 일 단위로 환산 후 연 매출액 산정

** 기업은 2023년, 2024년 매출액 중 더 높은 매출액을 선택하여 제출 가능

- 연 매출액은 2023년, 2024년 중 1개년도에 대해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법인·개인사업자)'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면세사업자)' 자료를 통해 확인

- 사업 참여신청시 연 매출액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참여승인 이후에는 매출액 변동이 있더라도 연 매출액을 추가심사하지 않음

* 참여승인 이전까지는 과세 신고 일정 등에 따라 매출액 증빙 대상 연도를 변경할 수 있으나, 참여승인 이후에는 매출액 증빙자료를 변경할 수 없음

○ 매출액 기준 요건 제외 사항

- 업력 1년 미만의 기업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및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의 자료발급이 불가능한 '면세_법인사업자' 혹은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비영리단체'는 매출액 심사없이 사업참여 가능함

예시

- ① '22.10.1. 설립하고 '23.1.1.~'23.12.31. 동안의 매출액은 7,200만원('24.1.20. 과세 확정신고), '24.1.1.~'24.12.31. 동안의 매출액은 1억 3,400만원인 기업('25.1.10. 과세 확정신고)이, '25.3.1. 사업 참여신청을 하고, 기준 피보험자수('24.3.1.~'25.2.29. 까지의 평균 피보험자수)가 5인인 경우
 ⇒ 연 매출액은 '23년, '24년 중 기업에 유리한 연도로 택일하여 제출 가능하므로, '24년(1억 3,400만원) 매출액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였다고 가정
 ⇒ 연 매출액(=1억 3,400만원)이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5명)에 1,900만원을 곱한 값(=9,500만원)보다 크므로 사업 참여 가능
- ② '23.5.1. 설립하고 '23.5.1.~'23.12.31. 기간 매출액이 3,000만원('24.1.25. 과세 확정신고), '24.1.1.~'24.12.31. 기간 매출액이 8,000만원(과세 미신고)인 사업장이 '25.1.10. 사업 참여신청을 하고, 기준 피보험자수('24.1.1~'24.12.31.)가 3인인 경우
 ⇒ 연 매출액은 '24년 매출액이 미신고 상태이므로 '23년 매출액 활용
 * '23년 연 매출액 : $3,000\text{만원} \div 245\text{일('23.5.1.~'23.12.31.까지의 일수)} \times 365\text{일} = 4,469.3\text{만원} \approx 4,470\text{만원}$
 ⇒ 연 매출액(=4,470만원)이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3명)에 1,900만원을 곱한 값(=5,700만원)보다 작으므로 참여 불가

1-5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참여기업 적격 여부를 판단함

- 사업참여 신청은 사업 단위를 기준으로 함이 원칙임

- 다만, 하나의 사업이 둘 이상의 장소로 분리된 사업장을 두고, 사업장별로 고용보험 관계가 분리되어 있어 사업장별 피보험자를 구분·관리할 수 있는 경우는 사업장 단위(사업장 관리번호 단위)*로 신청·지원 가능

* 「고용24」 로그인 기준(사업자등록번호)에 따라 사업장 단위(사업장 관리번호)에 개별 사업자등록번호가 1:1로 매칭된 경우 신청 및 지원 가능

예시

- ① 기업 A는 본사(A', 서울, 사업자등록번호 111-11-11111) 와 지사(A'', 부산, 사업자등록번호 222-22-22222)로 구분되어 있고, 각각 고용보험에 가입(각 사업장관리번호 부여)된 경우
 ⇒ ① 기업 A는 **사업 단위로 참여할** 수 있으며,
 * 본사 소재지에서 사업참여하며, 지사는 관련 사업장으로 등록
 ⇒ ② 본사(A')와 지사(A'')로 각각 구분하여 **사업장 단위로도** 사업 참여가 가능함
- ② 기업 B는 사업자등록번호는 1개(대구, 333-33-33333)이나, 고용보험은 본사(대구, B'), 지사(구미, B'')로 각각 가입되어 있는 경우
 ⇒ 기업 B는 사업자등록번호가 1개이므로, **기업 B는 사업 단위로만 참여가능하며**,
 ⇒ 고용보험 상 구분되어 가입되어 있는 본사 B' 혹은 지사 B''로 사업참여 불가함 (**사업장 단위로 사업참여 불가**)
 ※ 당해연도 내에 사업 단위와 사업장 단위를 혼합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신청하여 승인받은 단위를 기준으로 "기준 피보험자 수",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및 "지원한도", "고용조정" 판단 범위를 결정함

1-6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25.12.31.까지 청년 채용을 완료해야 하며,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함

*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 경우, 기간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참여신청

예시

- ① '25.12.10. 청년을 채용하고, 채용 후 3개월 이내인 '25.12.24. 사업 참여 신청하는 경우 → 지원가능
 - ② '25.12.10. 청년을 채용하고, 채용 후 3개월 이내인 '26.1.2. 사업 참여 신청하는 경우 → '25년 사업으로 지원가능
 - ③ '25.12.10. 사업 참여신청을 하고, '25.12.24. 청년을 채용한 경우 → 지원가능
 - ④ '25.12.10. 사업 참여신청을 하고, '26.1.3. 청년을 채용한 경우 → '25년 사업으로 지원 불가
- * '26년 사업 운영계획(추후 확정)에 따라 다른 요건 충족시 '26년 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할 수 있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 기업의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 시점뿐만 아니라,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 중에도 아래 사유 발생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2-1 소비·향락업 등 업종

-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 * 일반유흥 주점업(56211), 무도유흥 주점업(56212), 기타 주점업(5621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무도장 운영업(91291) 등
- ②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업종* ☞ [별첨8]
 - *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 ** 다만, 숙박업 중 호텔업(55101), 휴양콘도 운영업(55103)은 가능

2-2 국가 및 공공기관 등

- ①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 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 ③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 ④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사혁신처장이 고시)
 - * 한국은행, 공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정부 또는 지자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정부 또는 지자체의 출자·출연을 받은 기관·단체가 재출자·재출연한 기관, 임원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의 장이 선임·임명·위촉하거나 승인·동의·추천·제청하는 기관·단체

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은 알리오시스템(www.alio.go.kr)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며,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를 통해 확인 가능

⑥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 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

2-3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확인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2-4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 * 산업재해 발생 명단공표 기업의 도약장려금 사업참여 제한기간은 1년임
 - (예시) '24.12월 산업재해 명단공표 기업은 '25년도 사업참여 불가하며, 24년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공표 시점부터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함
- * (확인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2-5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내(최대 12개월)에 있는 사업주

2-6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 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 개시 결정 이후 체납이 없는 경우와 고용위기지역에 위치한 사업장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이 확인된 기업 등은 예외

2-7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이직은 “최종 이직”을 의미함. 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 단, 「근로기준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한 경우와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였던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다시 고용한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2-8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이직은 “최종 이직”을 의미함. 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❶ 이직 전 사업이 인수·합병·분할된 경우에는 인수·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 ❷ 이직 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 ❸ 이직 전 사업의 시설·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인 경우
- ❹ 그 밖에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2-9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하여 부정 청구로 처분받은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또는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협약이 해지된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2-10 고용노동부의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2020년, 2021년 운영) 또는 청년일경험지원 사업(2020년 운영)에 참여하여 부정수급(부정청구)으로 처분받은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2-11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도약장려금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걱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업

III

지원 요건



1

지원대상 청년

- 아래 1-1, 1-2, 1-3(①~⑩ 중 하나), 1-4를 모두 충족하면서, 지원 제외 대상(p.23~24)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1-1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 만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기준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연소자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를 확인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 군필자의 경우 병적증명서, 군입영 사실 확인서, 복무확인서, 전역증 등 청년의 군 복무기간이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제출 필수

1-2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취업 중인 자로 보는 경우

√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

* 단, 일용근로자는 제외함 → 취업 중인 자로 보지 않음

√ 채용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 기업은 채용한 청년이 채용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청년의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를 채용자 명단 통보 시 제출

*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 홈택스 누리집 > 청년 본인 로그인 > 증명 등록 신청 >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 사업자등록 사실 여부

1-3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취업애로청년)

* 기간제 근로자(계약직)로 먼저 채용한 경우, 취업애로청년 요건을 확인하는 기준 채용일은 기간제 채용일임

①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 채용일 기준 가장 최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연속하여 4개월이 경과한 청년

* (예) '25.2.23.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청년은 '25.6.23.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

** 상용, 자영업자, 특고·예술인으로 취득·상실한 피보험자격을 말함

아래 고용보험 취득 이력은 실업으로 산정

- ✓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 내역
- ✓ 1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상용, 자영업자, 특고·예술인 등)

확인 방법

- ✓ 고용센터는 바로원, 고용보험시스템 또는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 등, 운영기관은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적격 여부 확인

②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 채용일 기준 고졸 이하 학력*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청년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대(원격대학)·야간대학·대학원 등을 포함한 대학에 재학(휴학 포함)중인 자(졸업예정자 포함)는 요건②를 적용하지 않음

**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한 자(3학년 출석일수 이수한 자 포함), 시·도 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에 취업한 경우 수업일수 2/3 출석한 자도 포함

*** 채용일 기준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이 지원 도중 대학 등에 진학하더라도 지원대상에 계속 포함

- 사업주는 대상 청년으로부터 「최종 학력에 대한 자기 확인서」(청년 본인 서명, [서식6-2])를 받아 제출하고, 채용자 명단 통보 및 지원금 신청 시 취업애로유형 중 '고졸'에 체크

확인 방법

- ✓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기업을 통해 청년으로부터 「최종 학력에 대한 자기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

③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여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직업안정 기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
- 고용일 이전 1년 이내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확인 방법

- √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 등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
- √ 취업희망풀에 등록되어 있더라도 고용센터가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원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원이 제외될 수 있음

④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거나, 미래내일일경험**·일학습병행 사업을 수료***한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한 청년으로 한정(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유형과는 무관)

** 고용노동부 미래내일일경험 사업: 인턴형(해외인턴형 포함), 프로젝트형, ESG 지원형, 기업탐방형

*** 유형과 무관하게, 일학습병행 사업 수료한 일학습병행 자격취득자 혹은 일학습병행 사업 이수한 이수증명서 제출 청년

**** "최초"는 생애 최초가 아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또는 청년일경험지원·일학습병행 사업 수료 이후 최초"를 의미함(단,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 이력 및 청년일경험 참여이력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은 '최초취업' 판단시 제외)

확인 방법

- √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 등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및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및 청년일경험지원·일학습병행 사업 수료 여부 확인

⑤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 지자체 청년센터 등을 통해 구직단념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자신감 강화 및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는 사업

확인방법

- √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여부 확인

- ⑥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자립지원 필요 청년 유형(예시)

- √ (자립준비청년) 보호자가 없거나 직접 양육하기 어려워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되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청년(「아동복지법」 제16조)
- √ (보호연장청년)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되다가 만 18세 이후에도 본인 의사에 따라 보호기간을 연장한 청년(「아동복지법」 제16조의3)
-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원가정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밖 청년으로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 입소 중이거나 퇴소한 청년(「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

확인 방법(예시)

- √ (자립준비청년)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기업을 통해 청년으로부터 '보호종료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확인서는 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시군구에서 발급
- √ (보호연장청년)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기업을 통해 청년으로부터 '아동복지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확인서는 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시군구에서 발급
-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소년)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기업을 통해 청소년으로부터 '입·퇴소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확인서는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 발급

- ⑦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고용정책 기본법」 제33조)

* 2024년 이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

** "최초"는 생애 최초가 아닌 "해당 사업장에서의 이직 이후 최초"를 의미함

- ⑧ 북한이탈청년*(「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만 15~34세 청년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확인방법

- √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기업을 통해 청년으로부터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민원24 발급 가능)」를 제출받아 확인

⑨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최초"는 생애 최초가 아닌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를 의미함

확인 방법

- ✓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사업주로부터 청년의 「폐업사실증명원」(국세청 발급)을 제출받아 확인

⑩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 일수로 환산하면 365일을 의미(2월이 29일인 해는 최대 366일)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대(원격대학)·야간대학·대학원 등을 포함한 대학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졸업예정자 포함)는 최종학력이 확정되지 않아 요건⑩은 적용하지 않음

고용보험 이력 중 아래는 가입기간 산정 시 제외

- ✓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 내역
- ✓ 3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상용, 자영업자, 특고·예술인 등)

확인방법

- ✓ 고용센터는 바로원, 고용보험시스템 또는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 등, 운영기관은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을 통해 해당 청년의 고용보험 이력을 조회·확인

1-4 근로조건 등

-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더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 ✓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 (보험적용)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 (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자

* 채용일 이후 근로조건 변경으로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임금수준)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받는 자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나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 √ 단, 해당 근로자가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 포함됨

- (근로조건 변경) 참여기업은 참여청년과 상호합의로 근로계약서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나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시점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변경된 근로계약서는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2

지원제외 청년

- 새로 고용된 청년이 1-1, 1-2, 1-3, 1-4 요건을 만족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2-1 채용일 기준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2-2 채용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단,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외국인 등록증 앞뒷면 사본 제출 필수

2-3 사업주가 청년을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 단, 위 지원금이 도약장려금 지원 금액(월 최대 60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지원 가능

다른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 지원 예시

도약장려금사업은 신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정규직 채용일(전환일)로부터 12개월 기간에 대해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

√ (예시1) 다른 지원금을 통해 채용일로부터 6개월간 월 30만원 지원을 받는 경우

☞ 정규직 채용일(전환일)로부터 6개월간은 월 최대 30만원, 7~12개월에는 월 최대 60만원 지원

√ (예시2) 다른 지원금을 통해 정규직 채용일(전환일)로부터 최초 1개월간* 월 60만원 이상 지원받는 경우

☞ 도약장려금사업 지원 불가

* '25.2.1.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 '25.2.1.~'25.2.28 기간(정규직 채용일로부터 최초 1개월 기간)동안 타 지원금으로 월 60만원 이상 지원받으면, 채용일로부터 연속적으로 지원받는 것이 아니므로 도약장려금사업이 아닌 다른 지원금을 통해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판단하여 도약장려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2-4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포함) 중인 자

- 단,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재직자단계 일학습병행제 참여로 대학 재학 중인 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완료한 자***의 경우,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 가능

* 이 경우, 학교에 재학 중이므로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하는 취업애로청년 요건②와 ⑩은 적용되지 않으며, 다른 취업애로청년 요건 충족시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미임

** 채용일 기준으로 취업애로청년 요건을 충족하여 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한 청년이 근속 중에 재직자단계 일학습병행에 참여한 경우 지원 가능
(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기업에 취업한 이후, 재직자 단계 일학습병행으로 학위과정에 참여한 청년의 경우 취업애로청년의 '고졸 이하 학력(채용일 기준)' 요건 적용 가능

*** 3학년 출석일수 이수 후, 동계방학 중 취업한 경우도 인정됨. 단, 시·도 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의 경우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취업 가능

2-5 신규채용 청년이 사실상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 【표_2 지원제외, 2-1. 소비·향락업 등 업종(p.13)】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2-6 인력 공급업(7512), 경비 경호업(75310),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74100) 기업에서 채용한 근로자를 간접고용 형태로 활용하는 경우

간접고용

√ 기업이 필요에 따라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지만 노무제공자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고 타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이용하는 고용형태(근로자 파견, 용역 등)

* 단, 해당기업에서 본사근무 등 직접 고용형태로 채용한 근로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3-1 '25년 중에 지원대상 청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

- '25.1.1.~'25.12.31.에 “만 15~34세*”의 지원대상 청년을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채용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 (최고 만 39세로 한정)

- '25.1.1. 이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 상 3개월 이내의 수습(시용) 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정규직으로 채용한 날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

*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도약장려금의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수습 또는 시용과 관계없이 도약장려금 지급 → 채용된 날부터 최소고용유지기간을 기산하며, 지원금도 채용된 날부터 1년간 지원

- '25.1.1. 이후 지원대상 청년을 인턴 등의 기간제근로자로 먼저 채용한 후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3개월 종료 즉시 전환한 경우 포함) **전환 시점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

* 기업에서 기간제로 채용한 청년을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도약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전환 전에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을 하여야 함 →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의 기산점 및 지원금 시작 시점은 정규직 전환일

* 기간제 계약 종료 즉시 정규직으로 전환 필수

* 기간제 종료 후 정규직 근무일 사이에 공백이 있는 경우, “1년 이내 동일기업 재취업”에 해당하여 지원대상 부적격

- ** '25.1.1.~'25.12.31. 내에 청년을 기간제근로자로 먼저 채용하고,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6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예외적으로 '25년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인정

- 단,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또는 「청년일경험지원」, 「일학습병행」 사업에 참여중인 청년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기간제(학습) 근로계약을 맺더라도 일경험 또는 직무능력 학습과정에 대한 참여이므로 일반적인 의미의 ‘취업’으로 보지 않음

3-2 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연내 ('25.12.31.까지) 청년을 채용하여야 함

- 예외적으로 청년을 채용한 이후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을 하는 경우,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참여 신청을 하고, 다른 지원 요건 및 지원 한도 등을 모두 충족 시 지원대상에 포함
 * 채용일로부터 3개월이상 지난 시점에 참여신청 한 경우 지원 불가
 * (예시) '25.3.1. 채용 시 '25.6.1.까지 기업이 참여신청을 완료하여야 하며,
 - 이 경우에 참여신청서(서식1)와 함께 참여신청 이전에(3개월 이내) 미리 채용한 청년의 정보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함
- 청년을 기간제근로자로 먼저 채용하고 사업 참여 신청을 하는 경우, 청년의 기간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전환 및 사업 참여신청까지해야 하며, 다른 지원 요건 및 지원 한도 등을 모두 충족 시 지원대상에 포함
-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일과 승인일 사이에 채용된 청년의 경우에는, 다른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 시 지원대상에 포함

4 지원금 신청 및 지급요건

4-1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 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함

- 2, 3회차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하되, 각각 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1~3회차 지원금은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 도과하여 신청시 지원 제외

신청 기한 예시

채용	6개월 고용유지	1회차 신청마감	채용 후 9개월	2회차 신청마감	채용 후 12개월	3회차 신청마감
'25.2.23	'25.8.22	'25.10.31.	'25.11.22	'26.1.31.	'26.2.22	'26.4.30

4-2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1년의 기간* 동안 고용조정 이직이 없어야 함

* 기간제 근로자(계약직)로 채용된 경우, 계약직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1년의 기간

- **고용조정 제한 대상 : 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청년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 이직도 없어야 함**

* **채용일에 관계없이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고용조정 이직

<고용보험 상실사유> 2. 회사 사정과 근로자 귀책 사유에 의한 이직(대분류)

대	중분류	세분류
2. 회사사정 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23.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계약파기 포함)	①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 인한 해고에 의해 이직한 경우 - 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방지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해고 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 ② 사업의 양도·양수·합병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한 경우 ③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실시된 고용조정계획 또는 대량의 감원 예정에 따른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의하여 이직한 경우 - 정리해고의 전 단계, 구체적인 인원 감축 계획 존재, 향후 인사상 불이익 조치가 예정되어 있어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응한 경우 ☞ 단, 인원감축의 불가피성 없는 관례적·일상적인 명예·희망퇴직 공고에 따라 이직한 경우에는 『11-⑬』으로 기재 - 대량 감원이 예정되어 있어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응한 경우 ④ 사업·부서가 폐지되어 신설된 법인으로 이직한 경우 - 고용승계, 아웃소싱, 그룹내 계열사간, 자회사간 전직,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사업장으로 변경되어 법인사업장으로 전직한 경우 포함 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회사의 업종전환, 일부 사업 또는 작업형태의 변경으로 인해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의하여 이직한 경우 ⑥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 등과 같은 경영의 악화로 인해 이직한 경우 ⑦ 결혼, 임신, 출산, 군입대 등의 경우에 퇴직이 관행이 된 사업장에서 이직한 경우 ⑧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는 없지만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계약이 파기해지된 경우) - 근로자의 업무상 중대한 과실이나 업무능력 미달 등의 사유가 없고 경영상 필요에 의한 불가피한 인원감축 등에 해당하지도 않지만 사업주가 해고한 경우 -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거나 의도적으로 소득감소를 의도한 경우)없는 사유로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계약 해지(파기)된 경우
	26. 근로자의 귀책 사유에 의한 징계 해고·권고사직 또는 계약파기	③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업무능력 미달 포함) 등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아니지만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하여 이직한 경우

○ 고용조정 제한기간 :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1년의 기간***

* 기간제 근로자(계약직)로 채용된 경우, 계약직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1년의 기간

- 청년 채용 후 1년 이내 청년이 자진퇴사 하는 등 지원이 종료되는 경우 그 지원종료시까지의 기간을 고용조정 제한기간으로 함
- 동일 사업장에 지원대상 청년이 여러명인 경우, 각 청년별로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전환 후 1년의 기간까지 고용조정 이직이 없어야 함

○ 위반 시 지원금 지급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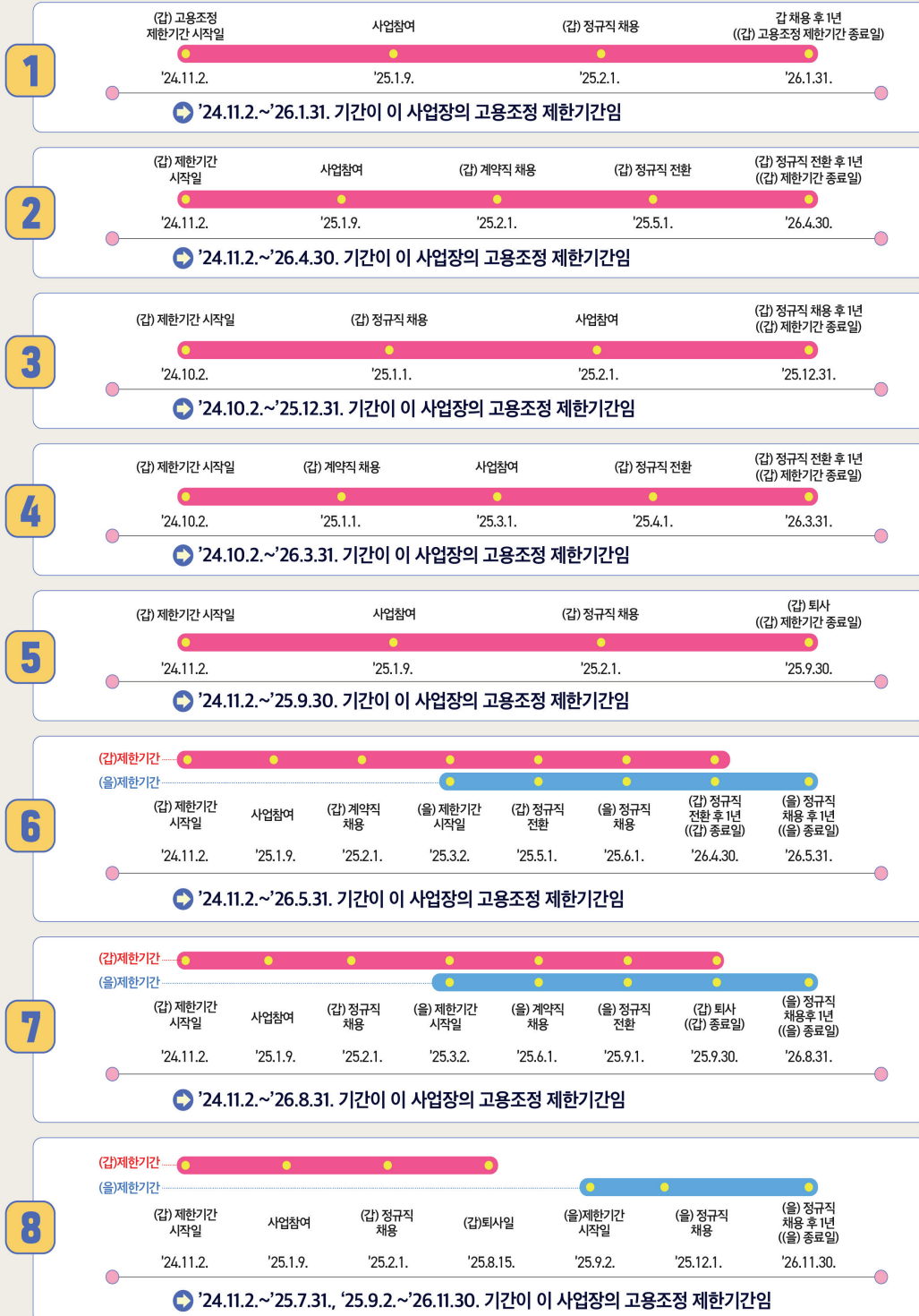
-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에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도래하지 않은 청년은** 지원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음
-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이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도래 이후인** 청년은 최초 채용일(정규직)부터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 전까지의 지원금만 월할계산하여 지급하고, 이후의 지원금은 부지급함

예시

- ① A참여기업에서 甲을 '25.2.10. 채용, 乙을 '25.6.4. 채용하였고, '25.10.1. A기업에서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 이직이 발생한 경우 → 甲의 경우 '25.2.10 ~ '25.9.30.까지의 지원금은 지급 인정(총 7개월 20일이므로 7개월분 지원금 지급), 乙은 지원금 전액 부지급

○ 신규채용 청년에 대한 지원제한 : 위반시 사업 참여는 유지되나,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용된 청년은 지원대상이 될 수 없음

고용조정 제한기간(예시)



IV

지원 내용



1 지원 기간

- 참여기업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 간 지원금을 지급함

* 최초 6개월간의 지원금은 1회차에 일시 지급하고, 이후 6개월간의 지원금은 3개월씩 2, 3회차로 분할 지급함

- 채용일은 '25.1.1.~'25.12.31.이어야 함

* 다만, 청년의 채용 시기에 따라 지원금은 '26년 이후에도 지급될 수 있음

참고

- √ 도약장려금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2 지원 한도

2-1 참여기업은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특례 :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참여기업의 경우 연평균 피보험자 수의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참여기업의 지원 한도 계산 방식

- √ 기준 피보험자 수에 50%(수도권 기업의 경우, 비수도권 기업의 경우 100%)를 곱하여 산출, 소수점 이하는 올림

* (예: 수도권 기업) 평균 피보험자 수 8.3명 → 기준 피보험자 수 9명 → $9 \times 0.5 = 4.5$ → 소수점 이하 올림하여 지원 한도 5명으로 인정

기업별 기준 피보험자수에 따른 지원 한도 예시

- ❶ 서울시(수도권)에 소재한, '24.1월부터 '24.12월까지 평균 피보험자 수가 12.6명인 기업이 '25.1월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을 하는 경우
 ☞ 12.6(소숫점 이하 올림) ≍ 13명 → $13 \times 50\% = 6.5$ (소숫점 이하 올림) ≍ 지원한도 7명
- ❷ '25.1월에 충청북도(비수도권)에서 고용보험 신규성립한 기업이 '25.5월에 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을 하며, '25.1월~'25.4월 평균 피보험자 수가 34.2명인 경우
 ☞ 34.2(소숫점 이하 올림) ≍ 35명 → $35 \times 100\% = 35$
- ❸ '24.7월에 전라남도(비수도권)에서 고용보험 신규성립한 기업이 '25.4월에 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을 하며, '24.7월~'25.3월 평균 피보험자 수가 3.2명인 경우(지식서비스산업에 해당)
 ☞ 3.2명(소숫점 이하 올림) ≍ 4명 → $4 \times 100\% = 4$ → 지원 한도 4명

2-2 참여기업의 지원 한도 설정 및 채용계획 변경

- 도약장려금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위 2-1의 **지원 한도 내에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은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 수 및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기업별 지원 한도를 승인함

❖ (주의) 고용센터가 최종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운영기관의 착오·오류, 고용보험 취득·상실 지연에 따른 기준 피보험자수 변동 등으로 지원 한도가 잘못 산정된 것이 발견될 경우 지원한도는 정정될 수 있음
 ☞ 운영기관은 지원 한도 승인 시 이 내용을 기업에게 안내하여야 함

- 참여기업이 지원 인원 조정에 따른 채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 한도 내에서 운영기관의 승인을 거쳐 변경 가능함
 -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의 채용실적이 저조하여 채용계획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참여기업과 협의를 거쳐 채용계획 승인 인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미채용 예상인원만큼 다른 참여기업의 채용계획 인원을 추가로 승인할 수 있음
- 참여기업이 **승인받은 채용계획 인원을 초과하여 채용한 청년에 대해서는 도약장려금 일체를 지급하지 않음**

따라서, 채용계획인원은 최대치(피보험자의 50%)로 작성 바랍니다.

3

지원 수준

3-1 지원대상 청년 1인당 지원금은 1년차 연 최대 720만원 (월 60만원×12개월)

- 지원금은 사업주가 지원대상 청년에게 지급한 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 지원대상 청년이 월 중간에 이직한 경우, 지원개시일(정규직 채용일 또는 정규직 전환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함

3-2 참여청년이 채용 후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전에 퇴사한 경우(고용조정 이직 또는 자발적 퇴사 등)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3-3 참여청년이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이상을 근로한 후 퇴사한 경우, 1회차에 6개월분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후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지급하되, 1개월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 퇴사한 월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단, 3개월 단위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지원개시일(정규직 채용일 또는 전환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하여 지원금 지급

↳ (예) 10개월 10일 근로시 → 1회차 지원금 360만원(6개월분), 2회차 지원금 180만원(3개월분)은 전액 지급, 3회차 지원금은 60만원(1개월분)만 지급

3-4 참여기업이 채용 후 최초 1년 이내의 지원대상 청년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는 경우, 해당 청년의 고용유지조치일수 동안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단, 해당 청년에 대한 최초 1년간의 지원기간 중 고용유지지원금 수급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지원함